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제도 확대

건설부는 하도급을 건설업계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비율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최고 1백20일짜리 장기어음을 끊어주는 등 횡포를 일삼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조장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부는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업법시행령은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합의 ② 법원판결 ③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④ 부도와 파산 등에 의한 원도급자의 지급능력상실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인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우리 대한설비공사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대해 2천2백여개 설비공사업체와 9천7백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운영실태조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는데,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직불대상을 대폭 확대하거나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직불제를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하도급대금중 일정비율 이상은 무조건 직불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원도급자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대금지급제도에 관한 관계법령

1. 건설업법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	제21조의 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수급인에

<p>의하여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수급인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p>	<p>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3.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할 것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3호의 권고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	--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법 률	시 행 령
<p>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 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건설하도급 계열화 촉진방안

건설부에서는 건설하도급 질서확립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UR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하도급자간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하도급계열화 촉진방안을 다음과 수립하였다.

근거 및 목적

[건설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하도급계열화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내용

- ① 일반건설업체에게 전문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 등록
- ② 공사경험, 공사실적, 기술능력, 재무구조 등에 대하여 등록자격심사
- ③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우선 하도급 및 기술정보의 교환과 자금지원

추진내용

(1) 근거법령 및 지침정비

[84년 12월 31일] 건설업법상 하도급계열화 근거규정 신설

[85년 10월 26일] 건설업법시행령상 하도급계열화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86년 12월 30일] 건설공사 하도급계열화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90년 7월 31일] 건설하도급계열화 촉진 지침 작성(전건설업체에 배포)

(2) 하도급계열화 권고 및 홍보

① '87년 이후 순차적으로 도급한도액 35억 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계열화 권고

② '91년도에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열화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대한건설협회)

(3) 하도급계열화 설문조사 실시

하도급계열화 추진 상황에 대한 업계의 평가와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발전대책수립을 위하여 지난 91년 9월부터 91년 11월 기간동안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 7천41개社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의 82.7%가 하도급계열화를 원하고, 하도급계열화의 장점을 응답한 업체가 58.5%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자의 72.1%가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큰 일반건설업체에 계열화 등록되기를 원하므로 계열화 지도방법의 다각화가 요망된다.

(4) '92하도급계열화 추진

① 기업규모에 따라 하도급계열화 지도방법 다각화

1-2군업체 1백46개社에 대하여 등록업체현황 작성관리

기타 7백51개社에 대하여는 기업규모에 따라 권고 및 홍보

② 지난 92년 4월 1일부터 대한건설협회에 하도급계열화 상담창구 설치 운영.

③ 건설의 날 건설업체 포상시 하도급계열화 추진실적 반영

(5) 하도급계열화업체 등록현황

① '92년말 일반건설업체 8백96개社중 2백35개社(26.1%) 실시.

1-2군 업체 : 1백46개社중 1백34개社(26.1%)

*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 1만8천8백64개社
기타 : 7백50개社중 1백1개社(13.4%)

평가 및 문제점

'92년도에 하도급계열화 지도방법을 다각화하여 1-2군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한 결과 계열화실사업체가 '91년도말 42% (61개社)에서 '92년도말에는 91.7% (134개社)로 계열화 확대되었으나 기타 업체는 계열화실정이 13.4% (101개社)로 저조하고, 하도급계열화가 정착되지 아니하는 경우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며 UR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저해요인이 된다.

하도급계열화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93추진방안

(1) 건설의 날 포상 및 실태조사 면제등 하도급계열화 실시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2) 하도급계열화 지도방법의 다각화를 확대하여 원·하도급자간에 원활한 시공협력 관계 정립

① 1단계 (도급한도액 150억원 이상 275개社) : 93년 5월중 계열화 등록업체현황 작성 관리 및 미실사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

② 2단계 (도급한도액 150억원 미만 기존업체

621개社) : 하도급계열화 권고

③ 3단계 ('92신규면허업체 804개社) : 하도급계열화 홍보

(3) 건설공사 일부의 하도급 의무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① 하도급 의무제도(건설업법 제22조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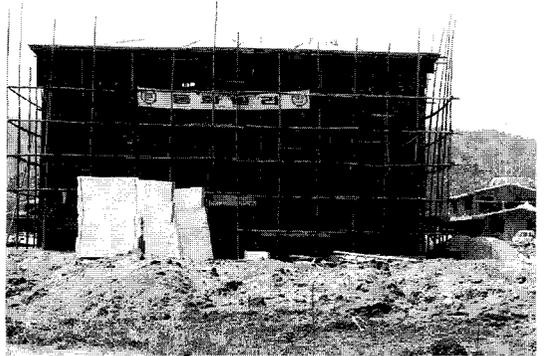
5-10억원 미만 공사 : 20% 이상 하도급

10억원 이상 공사 : 30% 이상 하도급

②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강력 제재

③ 공공발주기관에 건설업체의 의무하도급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요청

④ 대한건설협회장은 소속회원사에게 의무하도급 철저히 이행 지시



(4) 하도급계열화 상담창구운영의 내실화 도모

① 주관 : 대한건설협회

② 협조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③ 상담내용
㉠ 하도급계열화 실시요령 및 절차
㉡ 하도급계열화를 희망하는 쌍방업체에 대한 공사실적 ※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④ 추진사항 : 각 협회에서는 하도급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소속회원사에게 홍보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설비공사협회는 하도급계열화업체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정보자료를 대한건설협회에 수시 제공하는 등 공동협력체제를 유지한다.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시행

- 저가투찰시 선급금 미지급
- 계약서작성 생략이 가능한 공사금액의 상향조정
- 입찰공고에 공동계약 이행방식 명시 의무화
- 예정가격산출 기초금액 일률삭감 금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
- 지명경쟁 대상 공사금액 상향조정
- 정부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정
- 수의계약대상 공사금액 상향조정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대상 공사금액 상향조정
- 저가투찰자에 대한 차액보증금 강화
- 하자보수 보증금 상한액 조정
-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화

정부는 정부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 등 관련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덤핑입찰에 의한 정부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계약제도중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저가심사제를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지난 2월 22일 개정했다.

□저가투찰시 선급금 미지급(제56조)

선급금 지급대상 공사금액을 상향조정,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저가투찰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서작성 생략이 가능한 공사금액의 상향조정(제67조)

예전의 5백만원 이하의 공사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공사로 금액을 높였다.

□입찰공고에 공동계약 이행방식 명시 의무화(제71조)

공동도급 방식이 분담이행방식인지 혹은 공동이행방식인지를 입찰공고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정가격산출 기초금액(설계가격)일률삭감 금지(제78조 제3항)

기초금액(설계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 작성시 예정가격조서에 조정사유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제91조의 2)

대상공사 및 심사기준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명경쟁 대상 공사금액 상향조정(제93조)

종전에는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였으나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정(제99조)

종전의 저가심사가 가미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① 지역제한대상공사(전문건설공사 3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 20억원 미만)는 제한적 최저가격낙찰제를 ② 지역제한을 초과하는

공사는 최저가격낙찰제를 도입했다.

※ 제한적 최저가격낙찰제 :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즉 85% 미만 입찰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수의계약 대상 공사금액 상향조정(제104조)

중전의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였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제119조)

법령에 의하여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했다.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공사금액 상향조정(제121조)

중전의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저가투찰자에 대한 차액보증금 강화(제123조)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시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보증서를 낼 때는 차액의 2배로 납부하도록 했다.

□하자보수 보증금 상한액 조정(제125조)

중전의 1백분의2~1백분의5 이하에서 1백분의2~1백분의10 이하로 조정했다.(이는 저가투찰시 하자보증금을 2배로 늘리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화(제130조)

입찰참가신청을 하고도 입찰에 불참한 부정당업자를 중전에는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불참자」로 했으나 「당해 회계년도중 3회 이상 입찰불참자」로 개정, 제재기준을 강화했다.(이 규정은 경과조치를 두어 올 2월22일전에 입찰 공고한 공사는 중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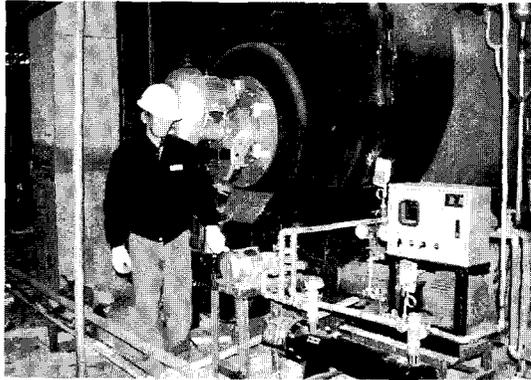
(93. 2. 22 공포 시행, 다만 이미 입찰공고된 공사는 중전규정에 의하여 PO제와 보증금납부제로 개정내용은 각각 별도의 시행일자 참조)

구분	개정항목	대상(내용)	비고
계약금액 조정제도	물가변동에 의한 경우	미 이행부분의 단가변동폭의 합계액이 미 이행부분 금액의 5%이상 일때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 시 협의 결정	새로 산정한 단가와 이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내	
보증금 면제제도	계약보증금 면제범위 확대	국가로부터 면허, 허가, 등록증을 얻어 사업을 영위한 자 중 별도의 일정기준에 해당될 때	기준 : 재무부장관의 정함
보증금 납부제도	보증금 납부수단 확대	@자기압수표 @신탁회사 수익증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발행보증서	납부수단에 포함 (93. 5. 26시행)

구분	개정항목	대상(내용)	비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PQ) 도입	대형특수공사	100억원이상의 공사로서 지하철, 댐, 발전소 등 특수기술, 공업이 필요한 공사 (93. 7. 1 시행)
낙찰자결정방법	최저가 낙찰제 도입	20억원 이상 공사 -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의 8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 입찰자
덤핑입찰방지대책	◦ 차액보증금납부 강화	@현금 납부의 경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 @보증서 납부의 경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의 2배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 선금금지급 배제	선금금 지급 없음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 하자검사 강화	년 1회씩 외부전문기관의 하자검사 의무화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 하자보수 보증강화	계약금액의 10%의 하자보증금 예치	예정가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적정원가보장대책	공사원가삭감 배제	원가계산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가격을 재무관이 삭감할수 없도록함	
부정당업체 제재	1년에 3회이상 입찰 참가 포기시 제재	제재기간 1월이상 3년이하	
공동계약의 입찰방식	입찰공고시에 명시	공사의 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관서에서 결정하여 공고	
소규모 계약대상 확대	◦ 일상경비 지급대상	300만원→500만원 이하	
	◦ 선금금 지급대상	1천만원→3천만원 이상	단, 용역은 1천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 생략	500만원→1천만원 이하	

구분	개정 항목	대상(내용)	비고
	◦ 지명경쟁대상(공사)	5천만원→1억원 이하	
	◦ 수의계약대상(공사)	1천만원→3천만원 이하	
	◦ 계약보증금 면제	500만원→1천만원 이하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대여자 조치계획



건설업자는 다른 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이중취업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을 대여자로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생각되어 건설부는 앞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각 협회에 '92년도 신규 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자를 포함한 소속회원사에게 다음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건설기술자들이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대여 또는 이중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를 시달하였다.

<다음>

(1) 각 건설업체에서는 다른 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을 대여자로서는 아니더라도 이중취업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국가기술자격을 대

하거나 이중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건설업체에 소속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자격대여 또는 이중취업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엄중 조치하게 되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 건설업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증명서상 이중등록사항이 없어야 함)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각 협회에서는 건설업면허 기준미달 또는 이중취업자 적발시 그 결과를 해당기관(건설부 또는 시·도지사)에 통보할 것.